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8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3
2.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전공 범위 확대	8
3. 해부용 시체 제공 목적 제한	13
4. 시체 수집·이용 현황 보고 의무 신설	16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26.
-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가 시체 해부 또는 표본 이용 등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생략) <u><신설></u>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 시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u>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을 ----- ----- ----- ----- <u>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u> <u>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u> <u>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u> <u>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u>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u>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u>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u>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u>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은</u> ----- ----- ----- - <u>시체등을</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시행령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의 시체해부심의회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음.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의)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체해부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구성) 해부심의회의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부심의회의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 2. 해부심의회의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해부심의회의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 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 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 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 그런데, 최근 일부 의과대학과 민간업체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을 이용하여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는 등 영리 목적 이용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²⁾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는 등 기증 시신에 대한 관리 미흡과 부적절한 시체 해부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온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와 시체 제공, 또는 시체표본의 이용 등을 하려는 경우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의학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교육 목적으로만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위원회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현행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연구자가 보존하고 있던 시체의 일부 폐기나 이관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26일 ‘의과대학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또한, 개정안 제16조제3항은 안 제9조제2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체해부심의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상 규정함에 동의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과대학 내 학생 대상 교육 목적 해부 외 이용 범위 확대 시 위원회 설치 의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장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에 적절할 것임.
- (대한의사협회) 시체 해부 시행 목적 등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규정이 이미 법령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굳이 법률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대한법의학회) 기존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할 것이므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해부 실시·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 전공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해부를 직접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과 의과대학의 해부실습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전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 -----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1. ----- ----- -----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의학·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 -----
<신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신 설> 3. ~ 6. (생 략)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 ~ 6.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이 의학 전공 학생을 지도하여 해부하게 하는 경우, 사법 부검, 행정 부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의학 학위가 아니라 융합 전공 과정으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나 학위에 해부학 전공이 기재되지 않는 교원⁴⁾의 해부 자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부학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의학 외의 전공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의생명과학대학 의과학과 졸, 의학 석·박사(의생명과학 전공) 등의 사례가 있음.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에 대한 심의를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접 해부를 하거나 해부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의 자격에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추가하여, 의과대학에서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해당 전공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도 해부 실시·지도 자격을 인정하고,

□ 교수의 지도 하에 해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의학·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 해부학 피교육생의 전공 범위를 확대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연구 등을 위한 해부학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
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 다만,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진의 경우 각 개인의
세부 전공에 따라 시체 해부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전혀 없
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해부 실시와
그 지도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
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해부 지도가 가능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전공자가
해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육안해부학⁵⁾ 교육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해부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융합 전공 학위로 해부학을 전공한 교원의 해부 자
격 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교육생의 전공 범위 조정 및
졸업 이후 전공자의 해부학실습교육 수행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함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육안해부학 교육에 대한 전
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해부학은 크게 육안해부학(gross anatomy)과 조직학(histology)으로 나뉘고,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정상
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육안해부학, 정상 신체의 현미경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조직학이라고 함.

- (대한해부학회) 비전공자에게 해부 지도를 허용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함.
- (대한병리학회) 의과대학에서 시체 해부를 지도하는 자에 대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데에는 동의하나, 해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부를 지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한법의학회) 비의사 해부학 교수의 증가에 따라 의사 해부학 교수 양성 저해가 우려됨.

3. 해부용 시체 제공 목적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체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체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과대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u>시체의 일부를</u>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 ① ----- ----- ----- ----- --- <u>시체등을</u> ----- ----- -----. <u>다만,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만 제공하여야 한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 중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의과대학 해부실습을 위한 시신 기증 건수가 대학별로 크게 차이 나고, 2025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고려하면 시신 기증이 저조한 의과대학의 경우 원활한 해부실습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최근 해부학 실습용 기증 시신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 등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인체의 구조 연구 즉 해부를 위한 시체의 제공은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하여 의과대학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부학 교육에 필요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집·보존 중인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 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목

적의 해부 실습 등에는 시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 다만, 개정안 제9조제2항은 시체의 해부에 대하여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경우와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된 경우 2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9조의4제1항 단서의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은 ‘제9조제2항 단서의 목적을 위한 시체등의 제공’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체제공기관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동의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체 제공 시 교육 목적 제공은 의과대학에만 한정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대한해부학회) 의과대학의 해부교육실습에 대해서만 시체의 이동을 허용하는 취지이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시체 수집·이용 현황 보고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체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이용 현황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보고와 <u>조사</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u>시체의 일부를</u>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고와 <u>조사 등</u>) ① ----- ----- ----- ----- ----- ----- <u>시체등을</u> ----- ----- ----- ----- -----.
<신설>	② <u>시체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은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u>시체의 일부</u> 의 제공 또는 연	③ ----- ----- ----- ----- <u>시체등</u> -----

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u>시체의 일부를</u>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검사·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 ----- ----- ----- ----- <u>시체등을</u> ----- ----- ----- ----- ----- ----- -----. ⑤ -----<u>제4항</u>-----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시체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해부학 실습용 기증 시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시체 이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정안은 시체등을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체 이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시체 이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종합병원에서 관련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제재 규정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9